

# 행정자치부

## 통 보

제 목 다중이용업소(○○상영관) 신고 처리 부적정

기 관 명 해운대구

내 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 제36조에 따라 영화상영관<sup>69)</sup>을 설치·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또한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법 시행규칙 상 시설기준<sup>70)</sup>과 다음의 기준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영화상영관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sup>71)</sup>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았을 것
2. 「전기사업법」 제66조의 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았을 것
3.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일 것

또한 「다중이용업소법」 제7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의 허가·인가·등록·신고수리를 하는 행정기관은 허가등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별지

6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영화상영관”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70) 조명시설, 음향시설, 방음시설, 소방시설 및 편의시설, 영사막, 최소면적(30석 이상이거나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통로(세로 20석마다 폭 1미터 이상의 가로통로를 설치) 등

7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안전시설 등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하며,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도록 되어 있다.

제1호서식의 다중이용업 허가등사항 통보서에 따라 영업주의 성명·주소, 다중이용업소의 상호·소재지, 다중이용업의 종류·영업장 면적, 허가 등 일자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극장, ○극장, ○○○○○ 신고 처리 부적정

재단법인 ‘○○○○○’은 부산광역시 ○○○구 ○○○○대로 000에 위치한 ○○○○○에 ○극장, ○극장, ○○○○○ 등 3개의 영화상영관 설치·상영하기 위하여 2011. 11. 9. 해운대구청에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해운대 소방서에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고 따라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해운대구에서는 신청서를 수리하기 전에 「영화비디오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발급받지 않았을 때에는 다중이용업주가 관할 소방서에 이를 신청하여 안전시설 등을 완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완비증명서가 발급되었을 때 등록증을 발부하여야함에도 재단법인 ‘○○○○○’의 ○극장, ○극장, ○○○○○ 등 3개 영화상영관에 대하여 완비증명서 발급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완비증명서 없이 2011. 11. 9. 등록증을 교부하였다.

## 2. ○○○○○ 영화관 신고처리 부적정

재단법인 ‘○○○○○’은 부산광역시 ○○○구 ○○○○대로 000에 위치한 ○○○○○에 ○○○○○ 영화상영관을 설치·상영하기 위하여 2016. 3. 16. 해운대구청에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을 하였고,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소

방서에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하였으나, 비영리 목적의 영화상영관이라는 사유로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취하하고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해운대구청에서는 신청서를 수리하면서 「영화비디오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여부를 확인하면서 「다중이용업소법」의 영화상영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재단법인 ‘○○○○○’의 ○○○○○ 영화상영관에 대하여 완비증명서 없이 2016. 3. 17. 등록증을 교부하였다.

그 결과 ○○○○○의 ○극장, ○극장, ○○○○○ 등 3개의 영화상영관은 2011. 11. 9.부터 2017. 3. 24. 현재까지 5년 4개월 동안, ○○○○○ 영화관은 2016. 3. 17.부터 2017. 3. 24. 현재까지 1년 동안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완비증명서 없이 영업을 하도록 하였다.

### 3.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에 대하여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영화비디오법」 제2조 제10호의 영화상영관(“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다중이용업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이러한 영화상영관에 대해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해운대구에서는 비영리재단법인 ○○○○○에서 운영하는 위 4개의 영화상영관이 비영리목적이므로 「다중이용업소법」상 완비증명서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비영리 재단법인일지라도 비영리사업의 목적의 달성하는데 필요하며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활동을 할 수 있는바, 단순히 비영리 재단법인이라는 이유로 ○○○○○의 4개 영화상영관에 대해

등록 의무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해당 영화상영관들이 영리목적인지 비영리목적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

그러나 「영화비디오법」 주관부처의 의견<sup>72)</sup>에 의하면 해당 영화상영관이 영리목적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없다고 해도 「영화비디오법」 제36조에 따라 영화상영관으로 등록하였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시설기준과 「다중이용업소법」 상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단법인 ○○○○○의 4개 영화상영관에 대해 명확하게 영리목적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는 없지만 「영화비디오법」 상 영화상영관(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으로 등록을 하였다면 마땅히 시설기준과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법」

##### 적용 배제여부

해운대구에서 ○○○○○이 공공기관에 해당함으로 「다중이용업소법」의 적용은 받지 않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하였다고 하지만, 해당 법률의 주관부처의 의견<sup>73)</sup>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해당하더라도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면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과 함께 「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공공기관이더라도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영화상영

72) ○○○○○부 ○○○○○과-0000호('17.0.00) 업무 질의 회신

73) ○○○○처 ○○○○과-0000호('17.0.00) 다중이용업소법 업무질의에 대한 회신

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더불어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비록 재단법인 ○○○○○이 비영리재단법인이라 하더라도 「영화비디오법」 제2조제10호의 영화상영관으로 등록하여 영업을 하려고 하면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려면 「다중이용업소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의 영화상영관의 좌석수가 총 873석으로 다수의 국민들이 이용하고, 「다중이용업소법」의 목적이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해운대구에서 등록해준 ○○○○○의 ○극장, ○극장, ○○○○○, ○○○○○ 등 4개 영화상영관에 대해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조치할 사항 해운대구청장은

**[통보]** 관련 법령에 따라 ○○○○○의 ○극장, ○극장, ○○○○○, ○○○○○ 등 4개의 영화상영관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